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속가능한 축산 농가실천운동”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 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Q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부숙(腐熟)이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세균, 사상균, 방선균 등)에 의해 발효돼 가축분뇨에 있는 유기물(지방, 단백질, 질소화합물 등)이 토양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에는 가축사육(배출시설) 면적이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살포해야 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 : (허가규모) 오리·닭 3,000㎡ 이상, (신고규모) 오리·닭 200㎡ 이상, 3,000㎡ 미만(메추리 200㎡ 이상)



덜 부숙되고 악취나는 퇴비
사용자-수거자 모두가 기피

토양, 수질,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철저한 가축분뇨·악취관리 필수

Q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있어 가금 농가들을 위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A 퇴비 부숙의 기본은 축사 바닥의 깔짚 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후 퇴비더미를 퇴비사로 옮겨서 교반해야 합니다. 축사 바닥의 깔짚을 질퍽하게 관리할 경우 호기성 미생물이 사멸될 수 있어 악취가 발생되고 이 악취는 주변 농가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사 바닥 깔짚에 수분이 많을 경우 세균성 질병 등이 번식할 수 있어서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축사 바닥 깔짚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가금을 출하하고 축사 바닥에 톱밥, 왕겨 등을 10~20cm(20cm 이상 권장) 정도 깔아 준 후 입식을 하고, 깔짚을 손으로 움켜쥐어 손가락 사이로 수분이 많이 나오는 정도(수분 70% 이상)가 되면 왕겨 등을 추가로 살포해 수분을 60~65% 정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평사 사육을 하는 오리의 경우 급이기 및 급수기 주변에 분뇨 배설량이 많아 빨리 질퍽해 질 수 있으므로 톱밥, 왕겨 등을 추가 살포하거나 질퍽한 분뇨를 퇴비사로 이동하여 부숙관리해야 합니다.

가금을 출하하고 축사에 있는 깔짚을 제거하지 않고 입식하는 경우 입식하기 전에 물 1톤에 호기성 미생물(유산균, 효모, 고초균 등) 2~5리터를 혼합해 축사 바닥 3.3㎡(1평)당 1리터를 살포하고 관리기 또는 트랙터(로터리 부착형), 갈퀴 등을 이용해 수시로 로터리 교반하고 건조시켜 깔짚의 수분이 50~60% 정도 되도록 관리하고 입식해야 합니다.

Q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자체에 이행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진단서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모범이 될 만한 사례 등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A 이행진단서는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고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농가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비사에 있는 퇴비더미를 교반관리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축사 바닥에 있는 분뇨와 깔짚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농가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을 참고한다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깔짚 및 퇴비더미의 관리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이행진단서 제출과 함께 축산농가들에겐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이 기간에 더 지켜야 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A 부숙도 대상농가에 대해 4월 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제출받고 있으니 해당 농가는 기한내에 이행진단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하신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통해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에 보관하고 있는 퇴비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제작 배포한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에 따라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부숙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자체에서 배포한 리후렛, 동영상 등을 참고해 농가 스스로 관리하면 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군 축산부서에 컨설팅을 의뢰해 컨설팅을 받은 후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더미를 부숙 관리하면 됩니다.

퇴비 부숙도 관리에 필요한 교반장비, 퇴비사 등이 부족할 경우 장비를 임차 또는 정부·지자체 사업 또는 자부담 등으로 장비 구입 및 퇴비사를 확보해서 퇴비 부숙을 추진해야 합니다.

Q 부숙도 준수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가금 농가의 경우는 더욱 문제인데 이부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A 교반장비 및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축산부서)에 사업 문의 및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트랙터, 스킵로더 등의 교반장비는 고가이므로 교반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사육규모 및 축사 형태 등을 고려해 농장 여건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축사 바닥 깔짚 교반 시 중대형 장비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로터리형 관리기 또는 소형 트랙터의 구입을 권장합니다.

지자체 등 예산이 부족해 교반장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반장비의 임차를 원하는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 가능 장비·임차일·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가축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장비가 농장에 들어가기 전, 나가기 전에 장비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Q 오리분뇨는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려고 해도 업자들이 기피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A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기피하거나 웃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타 수거물보다 오리분뇨의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분뇨를 수거한 업체에서는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추가 사용, 부숙관리 기간 지연, 악취저감 관리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리분뇨가 부숙이 잘되었을 경우 처리업체에서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톱밥, 왕겨 살포, 미생물제제 사용, 깔짚 및 퇴비더미 교반 등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처리 할 것인지는 농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가 지역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에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가축분퇴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우선 공급이 가능하므로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마지막으로 가금농가들에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그 동안 가축분뇨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처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덜 부숙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는 수요자인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업체에서도 관리되지 않은 생 분뇨는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축사의 신축·증축·개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퇴비사를 신축·증축하려 해도 주변 농가의 반대 민원으로 퇴비사 설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과정에서 악취를 줄여야 하고, 철저한 부숙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퇴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토양, 수질, 생활환경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퇴비 부속도 시행대비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운영 행정절차

계도기간(1년) 중 농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합니다



사전준비

퇴비 부속도 진단서를 제출해주세요

퇴비 부속도 관리
의 축사 바닥 깔짚 수분관리
의 퇴비더미의 수분관리
의 주기적 교반 실시
의 미생물 살포 등 부속도관리

**축산농가는 지금 바로!
퇴비 부속도 관리 내용을
체크하세요~**

농협(축산단체)
축산농가 부속도 이행진단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지원해드립니다.

운영(현장 컨설팅 지원)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정부
관계부처T/F 운영
-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현장 애로사항 해소(계속)

지자체
농가별 이행진단서 추진상황
일괄 점검
↓
미흡한 농가는 현장 컨설팅 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농가별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가용 지원 인력으로
농가별 문제점 해소

부속도 대상농가 부속도 감시,
교육, 컨설팅 지원

유예기간

계도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합니다

과태료 및 벌칙(이속분노법)

- 부속도 기준 준수 위반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가족분노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부속도 기준을 준수해주세요**